

목록

금감원 보이스피싱 리플렛_앞,뒤.....	1
금감원 보이스피싱 리플렛_내지.....	2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대응요령 설명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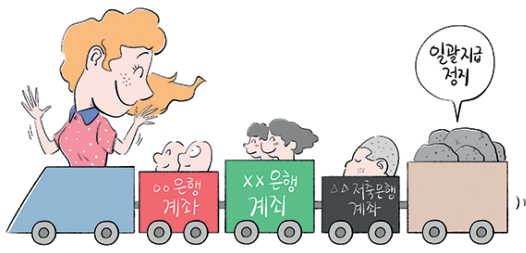
만화를 통해 복습하는 보이스피싱 대응요령



휴대전화 초기화 및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pd.fss.or.kr]



내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www.payinfo.or.kr]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www.msafer.or.kr]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조치



경찰(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 신청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은행연합회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여신금융협회
Korea Credit Guarantee Fund Corporation



저축은행중앙회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신용정보협회
Korea Credit Guarantee Fund Corporation

신용정보협회
Korea Credit Guarantee Fund Corporation

신용정보협회
Korea Credit Guarantee Fund Corporation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a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능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악성앱 삭제

- (악성앱 설치 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대응조치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전화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경찰청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이체·송금
피해가 있을 경우
실시

2-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
- (악성앱 설치 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2-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kr)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2-3 내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asafer.or.kr)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금융감독원